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89
----------	------

2021년 6월 1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5월 28일, 김생환 의원 외 23명
2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2일
3. 상정일자
 -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
(2021년 6월 18일 상정·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생환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1.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공개 책무를 규정함(안 제 3조).
2.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김생환 의원 외 23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89호로 발의되어 2021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,

상위법인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1항제9호에¹⁾ 이미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각급학교의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“학교급식 공개 정보가 특정업체나 이해관계자 등의 영업 및 이윤추구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

1)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(초·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) ①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(이하 “공시정보”라 한다)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9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10. ~ 15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있도록” 단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정보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8588, 2021.6.4.).

- 이와 관련하여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9조에 서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면서²⁾, “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”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동 조례안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2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② ~ ④ (생략)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학교급식법」”을 “「학교급식법」 및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”으로, “공급함”을 “공급하고,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”로, “향상”을 “향상과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학교에서 보유·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학교급식의 정보공개)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·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
2. 영양, 위생, 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3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
4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

5.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
6. 학교급식의 질,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학교급식법</u>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<u>공급함</u>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<u>향상</u>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학교급식법</u>」 및 「<u>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</u>」----- ----- <u>공급</u> <u>하고,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</u>----- ----- <u>향상과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학교에서 보유·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③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10조(학교급식의 정보공개)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·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</u> 2. <u>영양, 위생, 안전 등 학교급식</u></p>

제10조 · 제11조 (생략)

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3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

4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

5.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

6. 학교급식의 질,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
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 · 제12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